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획재정부, 2022. 7

- □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 하반 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 로의 전환에 대응한 행정 인프라 구축, 제도 개편 내용 등도 담고 있다.
- □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제·금융>

-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탄력세율 기준 37%)로 인하('22.7.1.~'22.12.31.)
 - * 유류세 30% 대비 추가 인하폭(부가가치세 포함, 원/ℓ) : (휘발유) △57(247→304), (경유) △38(174→212), (LPG) △12(61→73)
-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22.10.1.)
 - * 최대 3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하여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 지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현행 60~70% 수준*인 LTV 상한을 주택소재지역·주택 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22.3분기 중)
 - * (투기·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70%

<교육·보육·가족>

○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확대와 윤리적 이슈에 대비하여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22 하반기)

- '09년 2학기~'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22.7.6.~'24.12.)
 - * (현재) 평균 4.9% (5.8%~3.9%) → (변경) 2.9%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 지원('22.7월~12월)
 - *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보건·복지·고용>

-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유족급여금 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22.10.1.~)
 - * (일반 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 1천만원 → 5천만원 (일반 2·3형) 휴업급여금 (4일 이상 입원시, 120일 한도): 2~3만원/일 → 6만원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시 연 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5천원, 최대 12개월) 지원('22.7월~)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22.8.18.~)
 - * (규모) 향후 대통령령으로 지정 예정
 - ** (과태료) 1,000(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500만원(휴게시설 미설치시) 이하

<문화·체육·관광>

○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문화재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지 능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22.7.19.~)

<환경·기상>

- 국가 주요 계획·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22.9.25.~)
 - *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 산지, 항만, 하천 등 대상
- 환경표지 인증 관련, 일반 인증보다 엄격한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 대상 제품 군* 확대 및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신설('22.7월~)
 - *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및 바디워시, 의류 제품군 등
 - **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
-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른 전국 3,500여개 읍·면·동별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기후 정보포털을 통해 제공('22.12월~)
 - * (제공요소) 기후요소 4종(평균/최고/최저기온, 강수량), 극한기후지수 27종(폭염, 여름일

수 등),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정보 8종(냉난방도일, 건조지수 등)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22.8.4.~)
 - * (투자)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인력) 계약학과·특성화대학 등, (기술) 특화R&D+특례 지원
-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10억원) 신설('22.7월)

<농림·수산·식품>

-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와 농지 내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신규 설치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22.8.18.~)
- 기존에는 개별 사업체가 담당하던 항만 안전관리를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총괄* 하도록 의무화('22.8.4.~)
 - *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 대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

<국방 · 병무>

-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11,000 → 13,000원, '22.7월~)
-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 계지원센터 확대 운영
 - * (기존) 서울·대구·광주·대전에서 센터 운영 → ('22.7) 부산·춘천에도 센터 신설

<행정·안전·질서>

-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22.7.12.~')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
- 현행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청원 도입('22.12.23.~')
-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과('22.7.12.~)
- □ 이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 6월 30일(목)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보이는 웹페이지
- □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 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일부 발췌)

〈기획재정부〉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7%p 증가한 37%로 확대됩니다.

('22.7.1.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분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대비하여, 휘발유는 57원/ℓ, 경유는 38원/ℓ, LPG부 타은 12원/ℓ의 추가적인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포함).
- 추진배경: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화에 기여 하고자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탄력세율 기준 37%)까지 확대
- 주요내용 :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10%p 상향됩니다.

- 연 매출 2억원 이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매입세액 계산 시 매출액의 65%까지 매입액을 인정받고 있으나, 10%p 상향 시 75%까지 매입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식품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재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p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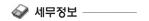
구분	年과세표준	기본	우대 공제한도(~'23.12.31)		
十七			음식점업	그 외	
개인사업자	2억원 이하	기계교조이 100/	65% → 75%	55% → 65%	
	2~4억원	과세표준의 50%	60% → 70%		
	4억원 초과	40%	50% → 60%	45% → 55%	
법인사업자		30%	40% → 50%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 한시적 확대

그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공급한 경우 과세된 김치, 간장, 단무지 등 기초식자재와 수입시 과세된 커피 생두와 코코아두 등을 물가 안정을 위해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세로 전환합니다.

- '22년 7월부터 '23년말까지 플라스틱, 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포장되어 판매되는 김치, 간장, 단무지, 간장 등을 부가가치세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또한, '23년말까지 커피·코코아원두(단, 볶은 것 제외)도 부가가치세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원가 및 식재료비 경감 추진
- 주요내용
 -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면제
 - *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볶은 것을 제외한 커피·코코아두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면제



•시행일

- (단순가공식료품 면제 확대) :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 2022년 6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날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이 2022년 6월 30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 개월간 연장됩니다.

- 이에 따라, 금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승용차에 대하여는 법정 개별소비세율에서 30% 인하(5→ 3.5%)된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소비자의 납세부담 경감 및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유 도
- 주요내용
 - 증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6개월 연장('22.6.30. → 12.31.)
 - '22.12.31.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율 30% 인하(5→ 3.5%)
- 시행일 2022년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2억원 이상인 자'로확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년 12월 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 라 구축 및 세원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를 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재

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에서 2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

* 2021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 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금액은 발급건수 당 200원이며, 연간 1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주요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총수입금액)이 3억워 미만인 개인사업자
 -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
 -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 (적용기한) 2022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관세청〉

■시내보세판매장(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도입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이 한국 방문 없이 국산품을 시내보세판매장(면세점) 운영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보세판매장의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고 국산품 판매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가 정상화되면 관광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방한 외국인에 한해 귀국 후 일정기간 내 판매하는 형태로 전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 * (성과 평가) 6개월 마다 운영상황을 분석
- 동 제도 시행을 위한 운영 지침은 2022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보세판매장 업계는 플랫폼 개발, 판매국가물품 선정, 해외배송 계약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후 업체별로 7월 이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보세판매장(면세점) 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제 관광수요 회복 지연으로 '20년 이후 경영위기 상황 지속
- 주요내용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해외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내보세판매장 온라인 플 랫폼을 통해 국산품 판매(해외 배송) 허용
- 시행일: 2022년 3월 23일
 (업체별 온라인 해외판매 인프라 구축 후 7월 이후 사업 시행)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본격 시행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됩니다.

-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관에 등록을 하여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등록대상은 ①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②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미만이더라도 등록을 희망할 경우 신청 가능
- 추진배경: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 및 통관적 법성 확립
- 주요내용
 - (신청방법)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통관지 세관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 팩스
 - (등록 유효기간) 3년
 - (미등록 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 ※ 최대 3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하여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 정 조정 및 채무감면 지원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가 지원대상이며, 장기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대출 전환 등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금리도 감면합니다.
 -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는 상환여력에 맞추어 60~90%의 원금감면 조치도 함께 지원 됩니다.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는 금년 10월부터 향후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신청방법 등은 별도 발표)
- 추진배경: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 주요내용 :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 원금감면 지원
- 시행일 : 2022년 10월 1일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

2022년 3분기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상한이 완화됩니다.

- 현행 60~70% 수준*인 LTV 상한이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됩니다.
 - * (투기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70%
- 추진배경: 단기간 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
- 주요내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완화를 우선 추진
- 시행일 : 2022년 3분기 중

■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

2022년 3분기 중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 원리금상환 비율(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보다 실질적인 소득흐름을 반영*하도록 미래소득 계산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 (現)대출시와 만기시점간 평균 → (改) ① 대출시~만기시점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 ② 장래소 득 산출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추진배경: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LTV 완화와 연계하여, 청년층 대출이 과도히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방식 합리화
- 주요내용: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구체적 방안 등 추후 발표 예정)
- 시행일 : 2022년 3분기 중

▮차주별 DSR 3단계 시행

2022년 7월 1일부터 차주별 DSR 3단계가 시행됩니다.

-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이 40%(은행)50%(비은행) 이내 인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 DSR 적용 예외대출은 제외
- 추진배경 : 상환능력 중심 대출관행의 확고한 정착을 유도하여 과도한 대출로부터 차주를 보호 하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
- 주요내용 :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DSR 규제를 적용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시행

2022년 하반기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3.25 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 포스트코로나 대비 특례보증은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 도록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는 자금공급 프로그램입니다.
- 코로나 장기화로 대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당 1억원(잠정)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보증료 차감·심사요건 완화 등

우대사항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정상영업 회복 및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추진
- 주요내용
 - o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3.2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
 - (자금용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지원한도) 기업당 1억원(잠정) / (보증방식) 직접보증
 - (우대사항) 보증료 차감. 심사요건 완화 등
- 시행일 : 2022년 하반기 시행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지원 실시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을 실시합니다.

- 금리상승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분들 중 기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번 특례보증은 '22.10월 중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로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어려운 자
- 대출심사 : 금융정보 위주의 상환능력을 주로 심사하는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상환의지 등을 심사에 반영할 예정
- 자금용도 : 자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긴급자금일반생활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
- 대출한도 : 최대 1천만원
- 상환방식 : 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금리 : 연 15.9%를 기본으로 성실상환 시 매년 인하* 예정 * 매년 3.0%p 인하(대출기간 3년) / 매년 1.5%p 인하(대출기간 5년)
- 시행일 : 2022년 10월 중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의무 위반 시 불이익 조치 마련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권고 및 감사인 지정제외 점

수를 부과하고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을 취소합니다.

- 특히, 통합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이 미비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최대 차기년도에 감사인 지정을 받지 못하는 수준까지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5월 3일 이후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회계법인의 부실한 품질관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마련하여 품질관리향상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회계법인이 상장회사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통합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일정 요건(등록요 건)을 충족하고 계속해서 유지하여야 함
 -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및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하고,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을 취소함
 - 특히, 통합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미비한 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제외점수 가 대폭 부과될 예정
- 시행일 : 2022년 5월 3일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건전성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및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다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신용화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 *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22년 20% →'23년 40% (상호금융) '22년 20% →'23년 30% → '24년 40%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추진배경: 제2금융권의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여 위험관리를 체계화하고, 금융업권간 충당금 적립에 대한 일관성을 제고
- 주요내용: 제2금융권(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업, 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

구 분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		지급보증	
			현 행	개 선	현 행	개 선
상호저축은행			대손충당금 X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	(좌 동)
여신전문 금융	신용카드	신용판매, 카드대출	대손충당금	(좌 동)	부동산PF 채무보증만 대손충당금 적립	모든 지급보증에 대손충당금 적립
		기타 한도성 여신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비카드 한도성 여신 상호금융		X	0	해당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前 잔여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여 고객 편의 성이 제고됩니다.

- 오픈뱅킹 이용고객이 간편송금, 간편결제 시 사전에 출금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금 한도조회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신설합니다.
 - ※ 이용고객이 오픈뱅킹을 통해 출금할 수 있는 일간 최대한도는 1천만원(한도 도달 고객의 해당일 추가 출금이체 이용은 자동 중지 처리)
- 신설되는 기능은 오픈뱅킹 참여기관, 유관기관 협의 및 전산 개발을 거쳐 2022년 10월 중 제공됩니다.
- 추진배경: 오픈뱅킹 이용자 편익 증진 및 한도 초과에 따른 출금실패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일간 출금이체 한도 조회 기능 제공
- 주요내용 : 오픈뱅킹 이용고객이 출금 전 일간 출금 한도 초과 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는 잔여 출금한도 조회 API를 신설
- 시행일 : 2022년 10월 중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권이 외부 서버나 플랫폼 등 IT 자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합니다.

('22.10월 중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금융보안원) 개정 예정)

- 불명확한 업무 중요도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업무 중요도 평가를 위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중복유사한 클라우드 사업자 안전성 평가(CSP) 항목을 정비*하여 평가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평가항목을 141개에서 54개로 축소하고, 비중요 업무의 경우 평가항목을 차등 적용 등
-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사업 추진의 적 시성이 높아집니다.
- 추진배경: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나치게 엄격한 현행 클라우드 이용 규제를 개선하여 금융혁신을 지원할 필요

• 주요내용

- 불명확한 업무중요도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업무중요도 평가를 위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를 마련
- 중복・유사한 클라우드사업자 안전성 평가(CSP) 항목을 정비*하는 등 평가절차를 간소화 * 평가항목을 141개에서 54개로 축소하고, 비중요 업무의 경우 평가항목 차등 적용
-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 시행일: 가이드라인 개정 : 2022년 10월 / 제도 시행 : 2023년 1월 1일

■데이터(가명정보) 결합 절차 개선

금융분야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필요시 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데이터전문기관은 보유한 데이터를 일정 요건*하에 타 기관의 데이터와 스스로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 등을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평가 등
- 개정내용은 규제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2022년 7월 중 개정 완료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데이터 결합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주요내용
 - 정보집합물을 이용하기만 하는 기관이 결합된 데이터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 보집합물 이용기관이 결합신청 및 결합절차에 참여 허용

- 결합된 정보집합물의 일부만 추출하여 활용하려는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집합물을 결합할 수 있는 절차 도입
- ㅇ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스스로 결합할 수 있는 요건 확대
- 시행일 : 미정(7월 중 개정 완료 추진)

〈고용노동부〉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 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추진배경 :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재규정(과태료 부과) 도입
- 주요내용
 -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에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
- 시행일 : 2022년 8월 18일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됩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 도입하고,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를 제공 받아 그 중 하나의 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통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수익률이 제고되어 근로자의 노후소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배경: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저금리 환경 속에서도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86% 이상 운용하여 수익률 저조
- 주요내용: 근로자(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등 무관심한 경우를 대비해 자동으로 적용 되는 운용상품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
- 시행일 : 2022년 7월 12일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2022년 7월부터는

- ① 유통배송기사(물류센터에서 점포·음식점 배송 또는 물류센터·점포에서 소비자 배송),
- ② 택배 지·간선기사(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
- ③ 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 등 운반) 3개 분야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 종 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5개 직종* 79만여 명 특고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골프장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등(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그간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경우, 산재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년 7월 시행 예정 이며,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는 개정법 공포(2022.6.10.) 이후부터 보조사업

장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추진배경: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곡물 등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3개 분야의 특고 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추가(시행: 2022년 7월 1일)
 -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 개정법 공포(2022.6.10.) 이후부터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
- 시행일: 적용직종 확대(2022년 7월 1일)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시행(2022년 6월 10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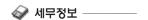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법률 상향으로 대표성과 민주성 강화
- 주요내용
 -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관련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
 - (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투표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
 - (위원선거인 선출) 직접 선출 방식과 동일하게 간접선거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법률 명시
- 시행일 : 2022년 12월 11일

■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실시

플랫폼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기업의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지원합니다.

■ 플랫폼기업 등이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50%, 연간 최대 3억원)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지원대상) 플랫폼기업 및 컨소시엄
 - (지원수준) 쉼터 등 소요 비용(임차료, 운영비, 인건비 등)의 최대 50%(연간 3억원 한도)
 - (지원요건)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수행 능력,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 판단
- 시행일 : 2022년 6월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2022년 8월 18일부터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됩니다. ('21.8.17. 개정, '22.8.18. 「산업안전보건법」시행)

- * 예외: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미연결 섬(제주는 제외)
- ** 건설공사발주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발주자 등이 해당됨
-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 발주자가 기술지도기관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도급인의 무리한 요구 등에 대응할 필요가 없게 됨
- 계약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K2B)에서 발급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하여 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개정사항은 오는 8월 18일 이후 체결되는 기술지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 우려
- 주요내용: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도록 의 무화
- 시행일: 2022년 8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 신설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10억원으로 정하여,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 다만, 국가 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공사 발주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성장 기반 조성과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됩니다.
- 추진배경: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 '22.7.) 제24조의2제5항 신설 및 최근 정보통신 산업 발전과 환경변화로 인해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활동 영역이 소규모 정보통신공사까지 진입하여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임
- 주요내용
 -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③「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공사업자로 설정
 - (도급가능한 공사금액 하한 신설) 국가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시행일 : 2022년 7월 12일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시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기업부설연구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기업 또는 연구소 운영 중에 연구개발인력 관련 사항을 변경 신고하려는 기업은 앞으로 연구개발인력의 4대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존에는 연구개발인력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기업이 제출하였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대보험 관리기관으로부터 가입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입정보 제공 관련 법령 개정(2022년 6월 29일 시행)을 바탕으로 기관 간 자료 제공을 위한 시스템 연계 및 관련 서식 개정을 거쳐 2022년 8월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부실 기업부설연구소를 방지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으로 부터 자료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신설
- 주요내용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법률)
 - 과기정통부가 자료의 이용 및 제공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대통령령)
 -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하려는 기업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목록에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또 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삭제(시행규칙)
- 시행일 : 2022년 6월 29일(법률, 시행령), 2022년 8월 (시행규칙)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우주산업이 혁신적인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하여,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먼저,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민간이 개방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주개발 사업에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도록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계약 이행 지체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주분야 성과의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을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 추진
- 주요내용
 - ① 우주개발 기반시설 확충 및 개방 확대
 - ② 계약방식 도입
 - ③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 ④ 우주분야 인력양성 및 창업 촉진 등

• 시행일 : 2022년 12월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산업통상지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지속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022년 8월 4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적인 기술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입니다.
- 투자인력양성기술혁신*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 노력을 뒷받침하고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핵심기술인력 보호기반**을 강화할 것입니다.
 - * (투자) 인하가인프라 등 패키지. (인력) 계약학과특성화대학 등. (기술) 특화R&D+특례
 - **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A 승인 의무화, 전문인력 지정제도 등 신설
- 추진배경:美中 패권전쟁을 시작으로 급박하게 전개 중인 주요국 "핵심산업 공급망 전쟁"에 신속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실현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지속적인 육성지원 시급
- 주요내용
 - 범국가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 신설
 - 투자기술혁신인력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 성장 뒷받침
 - 첨단산업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선 지원
 - ㅇ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전략기술인력의 보호기반 강화
- 시햇일 : 2022년 8월 4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2022년 7월 5일부터 산업데이터I 등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이 시행됩니다. ('22.1.4. 제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 이번 법령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산업 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 *지능정보화기본법, 공공데이터법 등 기존 법령은 추상적포괄적 법률이거나 특정 분야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규정상 공백이 존재

- 또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 * 산업가치사슬 전반의 혁신, 산업 데이터 생태계 및 인프라 조성 등을 망라하는 산업 맞춤형 법률정책 긴요
- 추진배경: 산업데이터I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①산업데이터 활용보호 규범, ②지원 제도, ③추진체계 등 규정
-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산업 데이터 활용보호 원 칙을 제시하여 기업 불확실성 해소
 - 선도사업 발굴지원, 계약 가이드라인, 표준화, 플랫폼, 협업 지원센터 등 민간 디지털 전환 을 뒷받침하는 지원 제도 근거 마련
- 시행일: 2022년 7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강화 등 실시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등이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 상향된 보정률(90%→100%) 및 하한액(50만원→100만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 아울러, 손실보상 대상이 소기업소상공인에서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2년 1분기분 소상공인 손실보상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온전한 손실보상 등 긴급구조플랜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 주요내용
 - (개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로 '21.7.7.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소상공인법 제12조의2)
 - (대상)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② '19년 동월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③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기업(연매출액 30억원 이하)

×

- * ('21.3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21.4분기 추가) 시설 인원제한 조치
- (기준) 개별업체 손실(영업이익 감소)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산식)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월별 일평균 손실액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월별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

× 월별방역조치이행일수

보정률

〈조달청〉

■ 벤처나라 '예비지정' 사업 시범 운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상품을 기술품질심사 없이 벤처나라에 등록하도록 하여, 창 업벤처기업의 판로를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현재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들의 기술품질평가에서 70점 이상 획득해야 가능하나, 청년기업(만 39세 이하)과 제조능력을 갖춘 초기 창업벤처기업(3년 이내)은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심사없이 신속하게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하여 홍보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 * 법적의무인증 보유 여부, 초기 창업벤처기업의 제조 여부 등
- 해당 상품은 6개월간 벤처나라에서 시범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며, '예비지정' 이후 벤처나라 상품으로 정식 지정될 경우 최대 5년 간 벤처나라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벤처나라 '예비지정' 사업은 2022년 7월부터 개시합니다.
- 추진배경 : 전문가들의 기술품질심사 없이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의 판로를 신속하게 지원
- 주요내용
 - 청년기업(만 39세 이하)과 제조능력을 갖춘 초기 창업벤처기업(3년 이내)은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심사없이 신속하게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하여 홍보판매
 - 해당 상품은 6개월간 벤처나라에서 시범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며, '예비지정' 이후 벤처나라 상품으로 정식 지정될 경우 최대 5년 간 벤처나라에서 상품 판매 가능
- 시행일 : 2022년 7월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현행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합니다.

-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타사제품 납품 등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여 기술력 있는 건전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7년 이래로 도입 및 시행되어 왔습니다.
- 금번 개정내용으로는 ① 창업벤처기업 협업대상 확대, ② 소프트웨어의 직접생산기준 완화, ③시정조치 요구 대상 확대, ④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적용시점 명확화 등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입이 한층 용이해지고, 제조등록 및 직접생산확인 점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9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창업벤처기업 협업대상 확대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현행 기준의 미비점 등에 대한 보완 및 정비 필요
- 주요내용
 - 창업벤처기업의 협업 대상을 (현행)중소기업에서 (개정)중격기업까지 확대
 -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 기술자격을 갖춘 대표자 1인으로도 직접 생산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신설
 - 자체기준표와 실제 생산방법이 상이한 경우 시정조치 기회 부여
 -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적용시점 명확화 등
- 시행일 : 2022년 9월 1일

■ AI기반 발주지원. 'e-제안요청 도움' 시스템 오픈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SW사업 제안요청 발주지원을 위하여 AI기반 발주지원('e-제안요청 도움') 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 「e-제안요청 도움」은 발주기관에 SW사업 제안요청서 자동생성 및 자가진단, 지능형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 발주기관은 SW사업의 규모와 유형에 적합한 참가자격과 평가항목 등 제안요청서 표준서식을 받아볼 수 있으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작성된 제안요청서 법령준수 및 요구

사항 오류 등 조달요청 자가진단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발주기관에 AI기반 제안요청서 자가진단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정보화사업 발주에 따른 시 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공공기관의 사업발주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제안요청 도움'은 2022년 8월부터 서비스 개시합니다.
- 추진배경: SW사업 제안요청서를 쉽고, 빠르게, 정확히 작성검토를 지원하기 위한 조달청 AI 기반 발주지원 시스템('e-제안요청 도움')을 구축운영하여 ICT발주체계 선진화
- 주요내용
 -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작성 단계에서 '참가자격', '평가항목' 등 공통사항을 Rule기반 제안 요청서 자동생성 도구 제공
 - 조달발주 지식베이스 및 유형별 제안요청서 비교진단 모델을 구축하여 AI기반 학습데이터 를 통해 제안요청서 자가진단기능 제공
 - ㅇ 공공정보화사업에 대한 유형별 제안요청서 지능형 검색서비스 제공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7월 1일(금)	7월 4일(월)	7월 5일(화)	7월 6일(수)	7월 7일(목)
	달		러 (USD)	1299.80	1294.20	1297.90	1298.00	1307.40
일	본		엔 (JPY)	957.18	957.14	955.43	957.05	960.93
영	국 파	운	드 (GBP)	1581.14	1566.95	1572.41	1551.95	1558.81
711	나 다	달	러 (CAD)	1009.51	1004.81	1009.96	996.28	1003.15
홍	콩 달	탈	러 (HKD)	165.64	164.93	165.42	165.42	166.61
위	안		화 (CNH)	193.89	193.06	193.79	194.16	194.76
유	로		화 (EUR)	1361.87	1350.37	1354.10	1332.72	1331.33
호	주 달	날	러 (AUD)	896.86	883.10	892.63	882.25	887.07
싱	가 폴	달	러 (SGD)	935.01	927.28	929.99	923.71	930.73
말리	레이시아	링 7	트 (MYR)	294.91	293.67	294.11	293.70	295.49